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I. 청탁금지법의 이해

1 제정 배경

- 공공부분의 부패로 인해 정부신뢰 저하 및 대외신인도 하락 우려
※ 일반국민의 57.8%가 공직사회에 대하여 부패하다고 응답
-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률(형법, 공직자윤리법 등)의 한계를 보완하고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를 위한 종합적인 통제장치 법제화
- OECD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 맞는 공직자의 행위규범과 기준을구체화하여 선진국 수준의 부패예방시스템 구축 필요

2 제정 경과

- 국무회의 「공정사회 구현,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 확산 방안」 보고시 입법 필요성 제기('11.6.14.)
※ 공개토론회('11.10월, '12.2월), 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 연구('12.4월~7월), 광주·대전·부산 등 권역별 대국민 설명회 개최('12.4월~5월) 등
- 정부 입법절차 진행('12.5.7.~'13.7.30.) 및 정부안 국회 제출('13.8.5.)

- 정무위 법안소위 의결('15.1.8.),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15.1.1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제외, 적용대상은 사립학교언론사까지 포함
- 법사위 공청회('15.2.23.),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15.3.3.)
- 국회 본회의 의결('15.3.3.),
- 청탁금지법 법령 공포('15.3.27.) 및 시행 (16.9.28.)
- 청탁금지법 법률 시행령('18.1.17) 일부개정

제정 의의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 우리사회에 만연한 연고·온정주의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청탁이 부정의 시작
 - 부패 빈발분야의 부정청탁 행위를 제재하고 청탁 방지를 통해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
- 공직자등이 거액의 금품등을 수수하였음에도 대가성 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 증가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행위를 직무 관련성·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 신뢰를 확보

공직자·공적 업무 종사자의 보호

- 공직자등이 청탁을 받을 경우 직무수행의 공정성 저해
 - 청탁금지법은 청탁받은 공직자등이 신고 등 절차를 따를 경우 청탁거절로 간주하여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선량한 공직자등 보호
- 공직자등과 경제적 이익을 같이 하는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

- 련하여 받은 이익은 공직자의 이익으로 보아,
- 청탁금지법은 선의의 공직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사실을 알았을 때 신고·반환하면 면책

II.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1 법률 적용 대상

가. 적용 대상 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
※ “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나. 적용 대상자 :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

- 공직자등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공직자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관인
※ 공무수행사인의 유형(4개)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관위원
-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관인
-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
- 심의·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

○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부정청탁의 금지

부정청탁의 행위 유형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 부정청탁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15개로 구체화

부정청탁 15개 금지 행위유형 자세히 보기

1. 인가·허가 등 업무 처리 인가·허가 등 직무 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행정처분·형벌부과 김경·면제 인가·허가의 취소, 조세, 과태료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김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채용 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선정·탈락에 개입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포상·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특정인 계약 선정·탈락에 개입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보조금·장려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출자 등을 하도록 개입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등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사용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10. 학교 입학·성적 등 처리·조작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장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장병검사, 부대 배속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행정지도·단속 등 결과 조작, 위법사항 묵인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 등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그 결과를 조작 또는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 등 개입 사건의 수사·재판 등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1번~14번 유형에 대한 지위·권한 남용 위 1번부터 14번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	---	--	---	--	--	--	--	--	--	--	--	--	--	--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

-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공개적인 방법으로 청탁하는 경우 등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규정(7개)

예외적인 경우						
1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2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3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	7
4	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등	5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6	질의·상담을 통한 법령·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일에 대하여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에서 제외
- 공직자등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하여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로 제재
-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금품등의 수수 금지

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

금품등의 수수 금지품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 재산적 이익을 주는 것이나 교통·숙박 등 편의 제공,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공직자등(배우자 포함)에게 제공하거나 수수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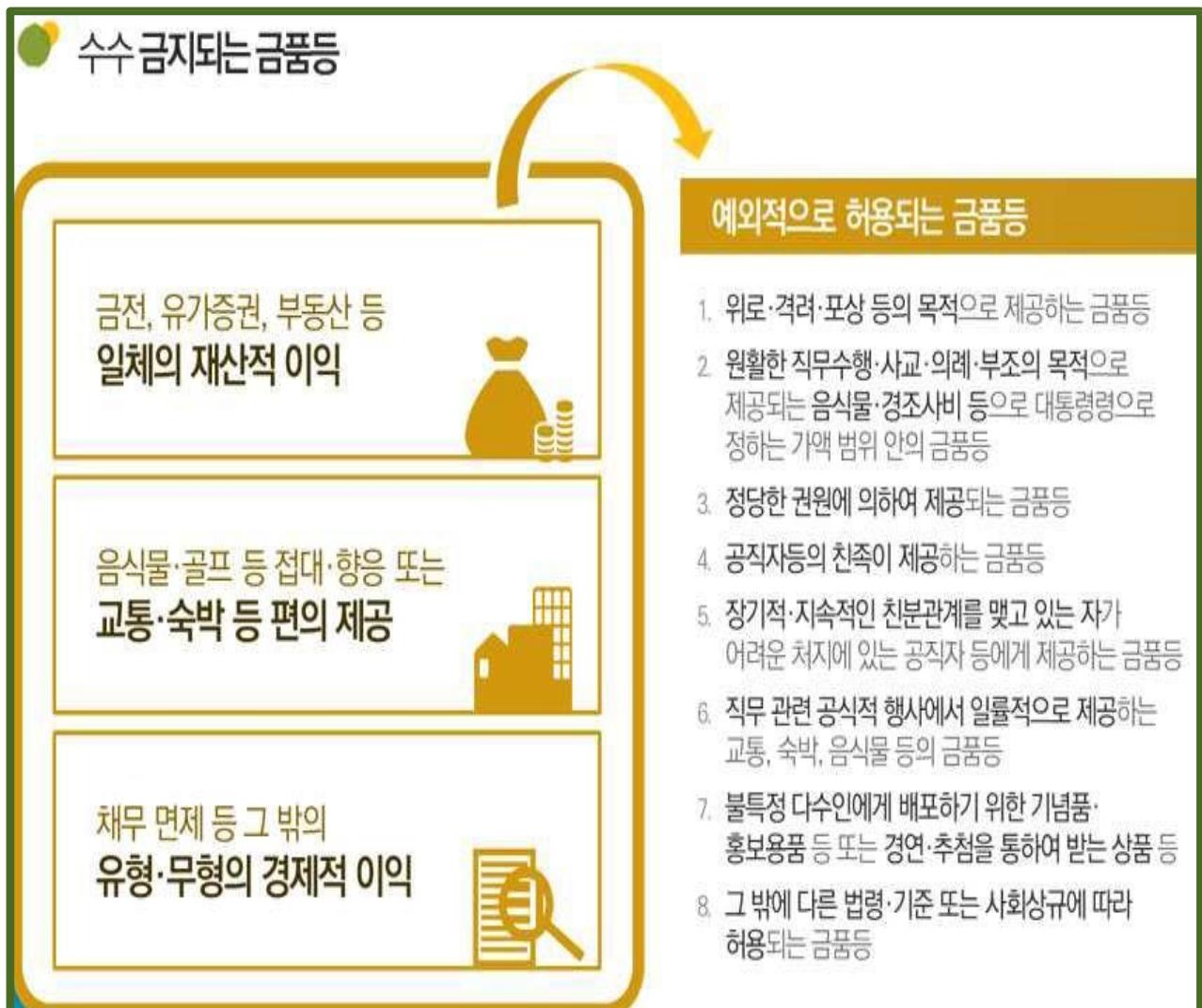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의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 금지
 - 배우자가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받은 경우, 공직자등이 이를 알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직자등을 제재
- ※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금품등을 반환·인도하거나 거부 의사 표시한 경우 제외



금품등의 수수 금지 예외 사유

-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고 과도한 제한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8가지 예외사유를 구체화
- 일정한 범위 안의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이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예외 사유에 해당



4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가. 위반행위 신고 접수 · 처리절차

신고방법

-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 가능
 -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로 하고 허위 신고 및 무책임한 신고 방지를 위해 증거 제출 필요

신고 접수기관의 신고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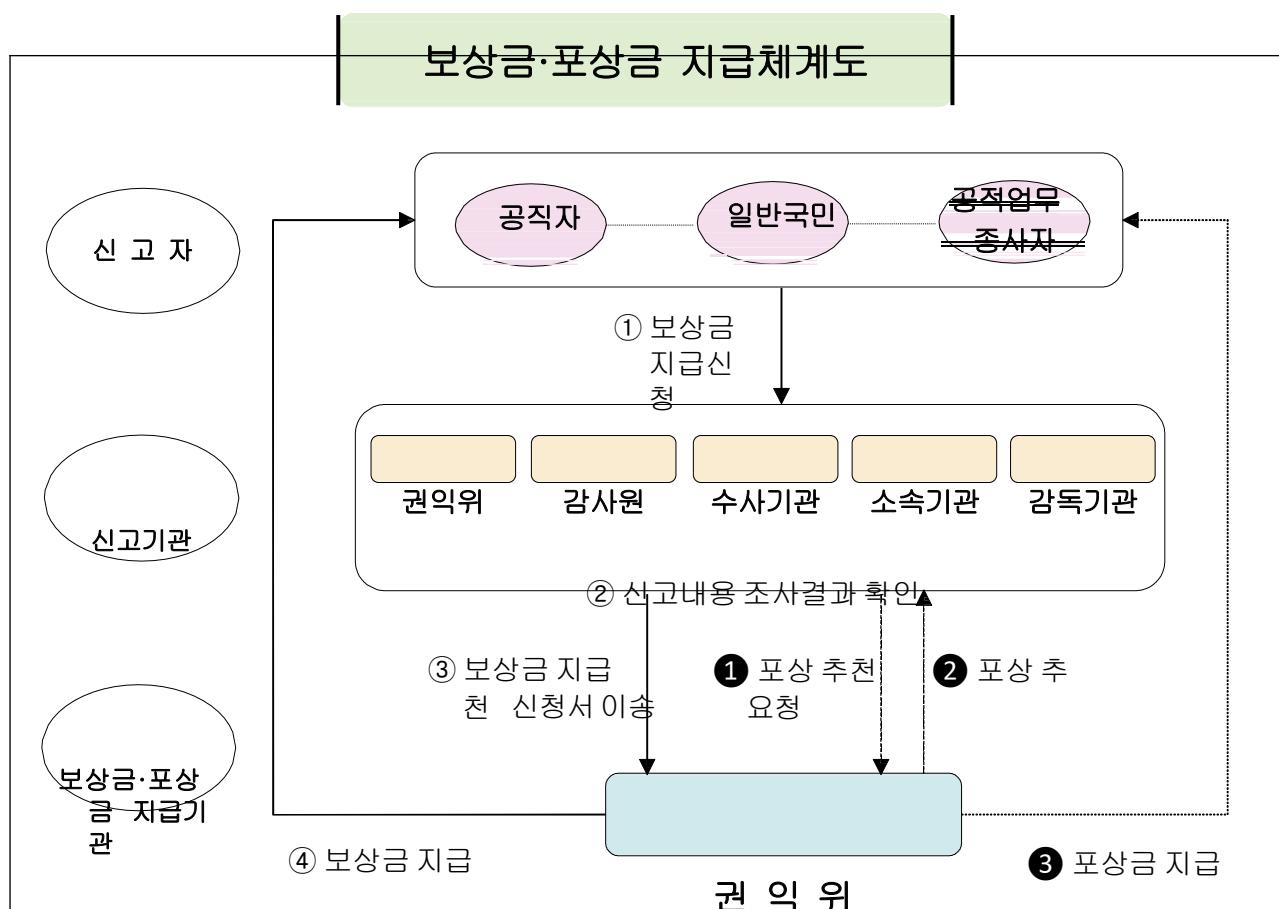
-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 및 관련 증거 유무 등 신고내용을 확인 후 조사기관에 이첩
- 조사기관(국민권익위원회를 제외한 신고 접수기관)
 - 신고를 받거나 권익위로부터 이첩을 받은 신고사건에 대해 조사·감사·수사 실시
 - 조사기관은 조사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그 결과를 신고자와 권익위에 통보(권익위에서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
 - 조사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
 -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조사기관 또는 권익위에(권익위로부터 조사결과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 신청 가능

재조사 요구

- 권익위는 조사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재조사 요구 가능
-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

나.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원상회복조치, 신분 비밀보호, 신변 보호, 책임 감면 등 보호장치 마련
-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수입의 증대를 가져온 경우 등에는 보상금·포상금 지급



5

징계 및 벌칙

의무이행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제재방안을 마련하되,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징계, 과태료 및 형벌 등 구체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이 자체 없이 소속기관장에 신고하거나 그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 제재대상에서 제외

-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안 경우,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금품등을 반환하면 제재대상에서 제외

위반행위별 제재 수준

- 부정청탁 금지

구 성 요 건		제재 수준
행위 주체	유 형	
이해당사자	‣ 이해당사자가 직접 부정청탁하는 경우	제재 없음
	‣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자	사인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등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 처리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금품등 수수 금지

구 성 요 건		제재 수준
직무 관련성	유 형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과 무관	‣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 또는 반환(인도)하지 않은 공직자등 - 금품등을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몰수·추징 대상)
직무와 관련	‣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 또는 반환(인도)하지 않은 공직자등 - 금품등을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
기타	‣ 외부강의등 초과 사례금을 수수한 후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않은 공직자등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청탁금지법 개정 주요내용

2018년 1월 17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이 개정이 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부정청 탁금지법 시행으로 사회전반에 걸쳐 반부패 효과가 확산되고 있으나, 농수 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을 배려하기 위하여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고 하네요. 주 요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행일 : 2018. 1. 17.

2. 외부강의 신고 보완 기간 연장

이전에는 외부강의 등의 신고시 사례금 총액등을 미리 알수 없는 경우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하였으나, 보완기간 경과 후 사례금 등을 받는 경우가 받아 해당사항은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3.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조정

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를 세 분화하여 축의금·조의금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훼농가를 배려 하여 화환·조화의 경우에는 10만원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농수산물을 배려하기 위하여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물의 가액 범위를 세분화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농수산가공품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 이되, 그 밖의 선물은 5만원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청탁금지법 개정 내용 총정리

구분	기존	변경 (2018. 1. 17.)
가액범위	음식물	3만원 동일
	선물	5만원 (농수산물 가공품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 (화환, 조화 10만원)
선물범위	상품권 등 유가증권 포함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외부강의등 상한액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직급별 구분 있음 (시간당 20~50만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공무원과 동일 (시간당 20~50만원)
	공직유관단체인 언론사 임직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동일 (시간당 20~40만 원)
외부강의등 보완신고 기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2일이내	해당 사항을 안날부터 5일 이내

청탁금지법 시행

주요 빈발 질의 사례

사례 1. 교사를 평가하는 학생도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지 여부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한달 간 목표 점수를 넘기면 칭찬의 의미로 선생님이 학생에게 젤리나 쿠키를 보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요즘은 교원평가에서 학생도 선생님을 평가하므로 선생님이 학생에게 간식을 주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나요?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담임 선생님이 초등학생에게 학업 성취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간식 등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사례 2. 학교의 성적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

저는 대학생으로 영화제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영화제 기간에는 수업참여가 불가능하여 영화제조직위원회에서 "행사참여로 인한 공결요청 공문"을 제출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 고등교육법령에서 학점은 출석을 위해 정해진 이수기간을 충족해야 인정되므로, 학생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서 출석인정을 요구하는 것은 각급 학교의 성적 등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에서 금지되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학칙에 의해 이러한 출석 인정이 가능할 경우에는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례 3. 승진이나 전보 시 선물 제공 가능 범위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동료 공무원이나 부하, 상사 공무원의 승진이나 전보 시 난, 꽃 화분 등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 동료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동료 공직자등의 승진 또는 전보 인사 시 5만 원을 초과하는 난, 꽃 화분 등을 선물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가능합니다.(화환, 조화 10만원)
- 그리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승진 축하 등을 위해 5만 원을 초과하는 난, 꽃 화분 등 선물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의 상급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으로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 예방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 원 이하의 난, 꽃 화분 등 선물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가능합니다.

사례 4. 경조사비의 수수 주체 문제

○○기업에 다니는 직원 A가 같은 회사 동료 직원인 B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내려고 하는데, 결혼 예정인 직원 B의 부친이 공무원인 경우 축의금을 내는 것이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인가요?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공직자등이 아닌 자가 받는 금품등은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공직자등이 아닌 동료 직원에게 축의금을 주는 것은 공직자등인 부친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사례 5. 거래업체에서 제공하는 기념품·홍보용품

관공서를 주 거래처로 광고업을 하는 사업자인데, 매해 신년에 맞춰 제작하는 제작 가액 5천원 상당의 탁상 달력을 거래처인 관공서에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 해당 업체와 거래 관계가 있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홍보용품인 탁상 달력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사례 6. 졸업식 꽃

졸업식 날에 졸업생이 함께 선생님에게 감사의 의미로 꽃다발을 선물하는 것도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나요?

- 졸업식날은 이미 교사의 학생에 대한 성적 평가가 종료된 후이므로 교사가 졸업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받는 꽃다발은 수수의 시기와 장소, 수수동기 및 목적,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례 7. 단체 인솔자 무료입장

연장학습, 체험학습 등을 위한 시설에 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를 무료로 입장시키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 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교사는 해당 시설의 이용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의 지도·인솔이라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료입장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

사례 8. 스승의 날 카네이션.꽃

교사가 스승의 날에 학생대표가 제공하는 카네이션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학생대표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등 학생의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수수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례 9. 외부강의 사례금 외 식비, 숙박비, 교통비 제공

외부강의등을 한 공직자등에게 식비, 숙박비, 교통비를 제공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나요?

-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